

기초생활권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012. 7. 19

이왕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차 례

I 추진배경 및 목적

II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III 실태평가와 추진사례

IV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으로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09년~13년)을 구체적으로 실현

- ◆ 초광역개발권($4+\alpha$) + 광역경제권($5+2$) + 기초생활권(163개 시·군)

-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은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중점

- ◆ 초광역개발권 :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강화
(4대 축+내륙특화벨트 개발($4+\alpha$))
- ◆ 광역경제권 : 개발단위 광역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5+2$ 광역경제권)



- 기초생활권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창조에 중점

- ◆ 기초생활권 :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163개 시·군)

2.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위원회 주요시책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2009.9

3. 목적

- 일부 지자체에서 특화발전의 우수사례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성장동력으로서 지속성을 가지거나 구체적인 성과로 인정받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 지역발전에 기여할 경제활동인구의 유출현상이 지속
 - ◆ 지역발전을 견인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가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생활정주여건을 개선
 - ◆ 대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초생활권의 발전방향을 제시
- 특화개발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율적인 특화발전 노력을 지원
 - ◆ 지역별 특성과 성과를 점검하고 상호학습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의 지속 전파



II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기초생활권의 개념

- ◆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공간단위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
- ◆ 개별 시·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둘 이상의 시·군
- ◆ 생활여건과 경제활동 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된 소규모 생활형 사업에 치중

●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

- ◆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공**
- ◆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의 수립
- ◆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과 소득창출
- ◆ 인접 시·군과의 **공동·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 ◆ 마을단위 하드웨어 개발사업보다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기초생활권 특화발전의 필요성/중요성
 - ◆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현에 기여
 -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기초생활권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 협력하는 기초생활권 중심의 특화발전 추진체계 정립
 - ◆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소득창출 등 경제여건과 직결되는 소규모 생활형 특화사업(specialized micro projects)의 성장을 유도하고 지연산업을 육성
 - ◆ 최종적으로는 생산, 여가, 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생활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에 기여
 - ◆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 유형별 특성을 존중한 기초생활권 단위의 지역브랜드 육성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낙후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230개 시·군·구를 4개 기초생활권 사업으로 재편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기초생활권은 지역특성 별로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 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3개 유형으로 구분
 - ◆ **도시활력증진지역**(국토해양부) : 특별 · 광역시의 군 · 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97개 시군구)
 - ◆ **일반 농산어촌지역**(농림수산식품부) : 시 · 군 중 도농복합형태의 시(제주 포함) 및 군 지역(농산어촌 120개 시군)
 - ◆ **특수상황지역**(행정안전부) :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15개 시군)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 대상도서(19개 시 · 군 186개 도서)
- 3개 지역구분과는 별도로 저발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하여 기초인프라에 대한 추가지원을 제공
 - ◆ **성장촉진지역**(국토해양부)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원대상지역 중 소득, 인구,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장관이 정하는 지역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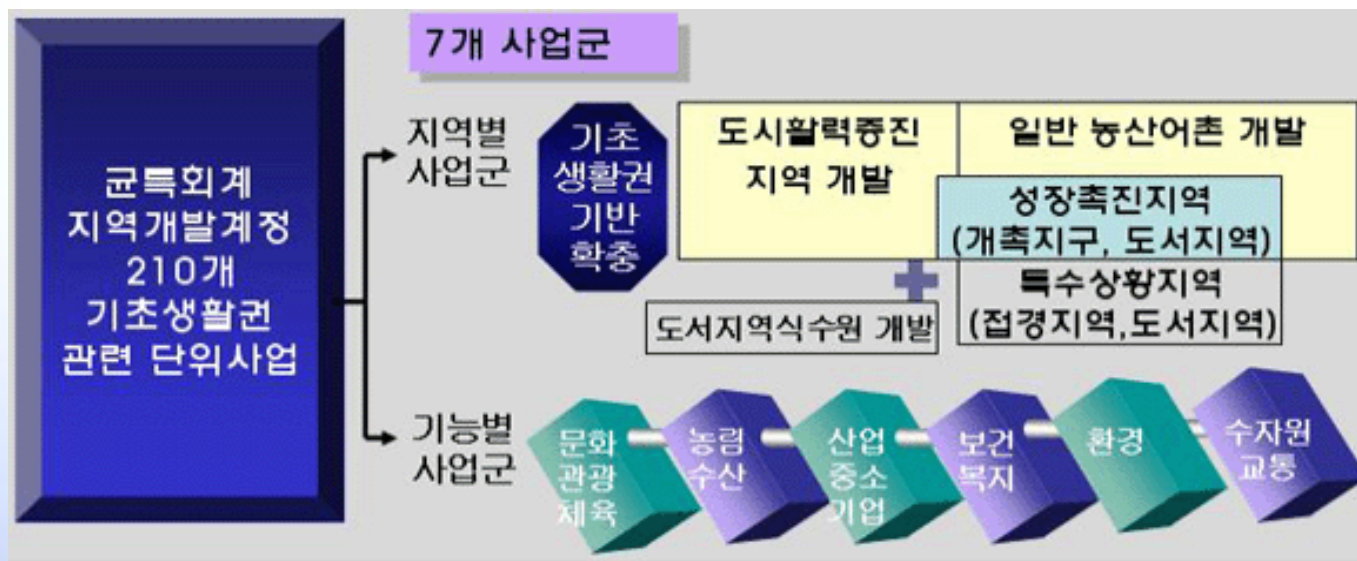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편

- ◆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변경

● 지역계정사업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

- ◆ 7개 정책분야 24개 사업군을 통합하여 포괄보조금으로 운영
- ◆ 지역별 사업군: 기초생활권 생활기반 구축관련 5개 사업(시·군·구 자율)
- ◆ 기능별 사업군: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 등 6개 분야 19개 포괄보조사업(시·도 자율)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포괄사업명 (주관부처)	사업재편 이전 세부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국토부)	·도시종합개발 ·소도읍육성 ·지표수보강개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어촌종합개발 ·신활력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축지구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16개 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식품부)	·도시종합개발 ·소도읍육성 ·지표수보강개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어촌종합개발 ·신활력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축지구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15개)
특수상황지역 개발 (행안부)	·도시종합개발 ·소도읍육성 ·지표수보강개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어촌종합개발 ·신활력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축지구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15개)
성장촉진지역 개발 (국토부)	·도시종합개발 ·개축지구 지원

자료: 도시포털(<http://www.city.go.kr>)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사업의 명칭이나 내용 등이 계속적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필요에 따라 단기간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통합, 세분되기도 하여 성과의 사후평가도 어려운 실정
 - ◆ 사례) 2009년까지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행정안전부의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등이 2010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명칭과 성격이 변경
 - ◆ 2010년에는 도시활력 재생사업, 마을활력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
 - ◆ 2011년부터 주거지 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4개 사업으로 변경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변화과정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이후

농림부

국토부

행안부

도 시 활 력 증 진 지 역

주거환경개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살고싶은도시만들기

개발촉진지구지원

신활력지원

소도읍육성

도시활력
재생

마을활력
재생

기반시설
정보

주거지
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역량
강화

기반시설이 불량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등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

쇠퇴한 중심시가지의 재생을 통해 지역의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등

도시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건설, 정비하는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신촌생태마을조성

어촌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도서종합개발

기계화경작토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소규모용수개발

농촌농협생활용수개발

* 기존 16개 세부사업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그룹으로 재편성, 자료 : 도시포털 홈페이지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도시 활력 재생 사업 (2010년, 6개 사업)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자원, 문화, 예술적 특성을 살린 특 화발전계획 및 삶터 가꾸기 계획을 수립, 추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특성을 살려 마을발전을 위한 지역의 기반시설 등 계획을 수립, 추진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정 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기반시설 등
	개발촉진 지구 지원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균형발전 도모(보령, 포항 해당)
	신활력 지 원	지역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개발 중점지원, 농특산물, 향토자원, 지역이미지 마케팅, 생명건강교육, 소프트웨어 사업 등
	지방 소도 읍 육성	지역특화산업 및 중심상점가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관광활성화 사 업 등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마을 활력 재생 사업 (2010년, 6개)	농촌마을 종합개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및 잠재자원 특성화를 통한 농촌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환경,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 종합개발(권역당 5년간 40~70억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마을기반정비,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환경 정비, 확충(면당 3~5년간 25~30억 원)
	산촌생태 마을조성	산촌지역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산촌지역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키 위해 생활환경 개선, 생산소득기반시설, 특화품목 개발, 산촌체험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역량 강화 등(마을당 2년간 16억 원 이내)
	어촌종합 개발	낙후된 어촌의 생산기반시설, 소득원개발, 생활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3년간 50억 원 이내)
	전원마을 조성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신규마을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조성(2~3년간 10~30억 원)
	도서종합 개발사업	생활여건이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과 생산기반, 문화복지시설 등 개선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기반 시설 정비 사업 (2010년, 4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경지내 농로를 확 ·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 촉진, 농산물 손상방지과 영농편의 제공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농업용수 확보가 부족한 기존시설을 확장하여 소요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3~5년간, 실소요 사업비)
	소규모 용수개발	물 공급시설이 부족한 50ha미만 가뭄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 확보를 통한 안정영농기반 구축(3~5년간, 실소요 사업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농어촌에 필요한 다목적 용수를 공급키 위한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마을당 2.2억 원)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011년 이후 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지 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 ◆ **주거지 재생**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주택의 직접 건설 또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 ◆ **중심시가지 재생** : 도시의 경쟁력 우위를 발굴하고,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상업, 환경 등 기능을 단독 · 복합적으로 재생하는 사업
 - ◆ **기초생활 기반확충** : 마을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정비 · 개량하는 사업
 - ◆ **지역역량 강화** :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도시지원센터 운영, 지역 및 사업을 위한 홍보 · 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해당 시군구(97개)

구 분	시군구	구 분	시군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원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충북	청주시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충남	천안시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전북	전주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목포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경북	포항시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남	창원시, [진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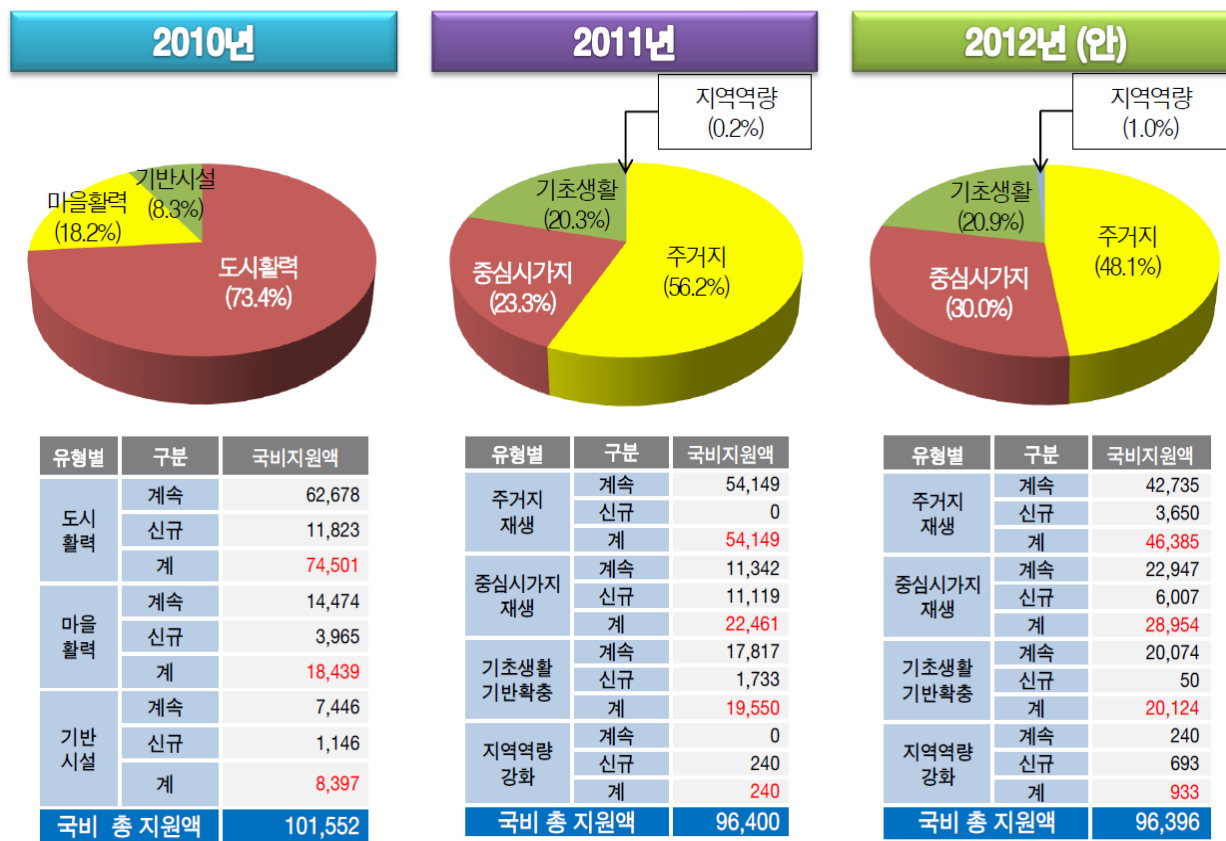
※97개 시·군이었으나,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96개 시·군으로 변경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연도별 국비지원액 규모(백만 원)



자료: 박병순. 201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이해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사업

- **해당 시·군 : 도농복합 형태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
 - ◆ 도농복합 형태의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지역은 도시활력증진지역에 해당)
 -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
 - ◆ 농산어촌 120개 시·군
-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 ◆ 2010년 13,909억 원, 2011년 13,303억 원, 2012년 13,292억 원
 - ◆ 국비 70%, 지방비 30%
- **주요 사업내용(2011년)**
 - ◆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769억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2,505억 원,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 1,363억 원, 기초생활 인프라 4,213억 원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특수상황지역



● 대상기준

- ◆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조치 필요지역

●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 : 15개 시군

●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 19개 시군, 186개 도서

- ◆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186개 도서 제외

●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 ◆ 2009년 2,039억, 2010년 1,936억, 2011년 1,994억, 2012년 1,994억
- ◆ 국비 80%, 지방비 20%

● 주요 사업내용(2011년)

- ◆ 기초생활기반 확충 1,302억 원, 지역소득증대 673억 원, 지역경관 개선 18억 원, 지역역량 강화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15개 시·군

구 분	시군별	행정구역 (읍면동)
합계	15 시·군	98읍·면·동(16읍·75면·7동)
인천광역시 (2군 17읍면)	강화군(1읍12면)	강화읍,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선원면,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옹진군(4면)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 북도면
	동두천시(4동)	불현동,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고양시(3동)	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경기도 (7시군· 46읍면동)	파주시(3읍10면)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릉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김포시(5면)	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양주시(1읍4면)	백석읍, 남면, 은현면, 광적면, 장흥면
	연천군(2읍8면)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중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포천시(6면)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춘천시(2면)	사북면, 북산면
강원도 (6시군· 35읍면동)	철원군(4읍7면)	철원읍, 김화읍, 동송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화천군(1읍4면)	화천읍, 사내면,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양구군(1읍4면)	양구읍, 동면, 방산면, 해안면, 남면
	인제군(1읍5면)	인제읍, 서화면, 남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고성군(2읍4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죽왕면, 수동면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 성장촉진지역은 3개 지역구분과는 별도로 저발전지역을 선정하여 기초인프라에 대한 추가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임
 -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 ◆ 시군(광역시의 군을 포함)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을 5년마다 종합 평가하여 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중 행안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공동 지정하는 지역
-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국비 100%)
 - ◆ 2010년 2,137억, 2011년 2,201억, 2012년 2,201억
- 주요 사업내용(2011년)
 - ◆ 지역근접성시설 지원 : 1,473억 원
 - ◆ 성장기반시설 지원 : 528억 원



특화발전 관련사업 추진실태

2. 4개 사업별 추진실태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 지원대상 사업 (시·군 권역별 개발사업)

- ◆ 관광휴양사업 기반시설 : 관광이나 휴양사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 용수 공급, 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민자유치사업 포함)
- ◆ 지역특화사업지역의 기반시설:산업단지나 지역특화 사업시설의 기반시설 지원
- ◆ 소득증대사업 지역의 기반시설: 지역소득증대 사업지역의 도로, 용수공급,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시도	행정구역(읍면동) (70개 시군)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5)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Ⅲ

실태평가와 추진사례

1. 특화발전 사업실태 평가

● 지역자원의 산업화에는 성공

- ◆ 청송군의 사과, 청양군의 청양고추, 고창군의 복분자 등 지역의 특화사업을 알리고 산업화하는 데에는 성공
- ◆ 주로 군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 중앙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

- ◆ 지역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
- ◆ 중앙정부의 지원이 종료될 경우 사업의 지속성 여부 의문

● 기초지자체별 특화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직의 부재

- ◆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특화발전계획이 부재
- ◆ 각종사업을 전략적으로 총괄 지원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종합적인 추진기구의 부재

1. 특화발전 사업실태 평가

- **부처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효과 낮음**
 - ◆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지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별로 분산적으로 개발사업이 지원, 관리
 - ◆ 지원시기가 상이하고 1회성 지원도 있어 사업간 연계, 단계적 추진 어려움
 - ◆ 유사한 사업의 경쟁적 추진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 **지역의 특성을 존중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부족**
 - ◆ 해당 지역이 가진 특성, 고유자산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
 - ◆ 복지·문화·교육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특성화사업의 추진이 필요
하나 진입도로, 농수로, 골목길 등 일반적인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진행
- **특화사업 브랜드의 지속성도 미약**
 - ◆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의 장이 바뀌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성격이 대폭 변경

2. 국내 우수사례 : 전북 진안군

- **대표적인 오지 산촌, 전라북도 진안군**
 - ◆ 단조로운 산업 기반, 열악한 교통 여건,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출
 -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공공서비스의 악화, 생활공간기능 상실
- **내부의 위기와 외부의 위협**
 - ◆ 용담댐의 건설(1990~2001)로 인한 1읍 5개면 68개 마을의 수몰과 인구 외부유출
 - ◆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1994)과 농촌경쟁력 저하·지역활력 상실
-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다,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의 시작**
 - ◆ 지방전임계약직의 채용(2000)과 민관 협치조직 “군정기획평가단” 신설(2001)
 - ◆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가꾸기 사업의 시작 : “읍면지역개발사업” 추진(2001)



실태평가와 추진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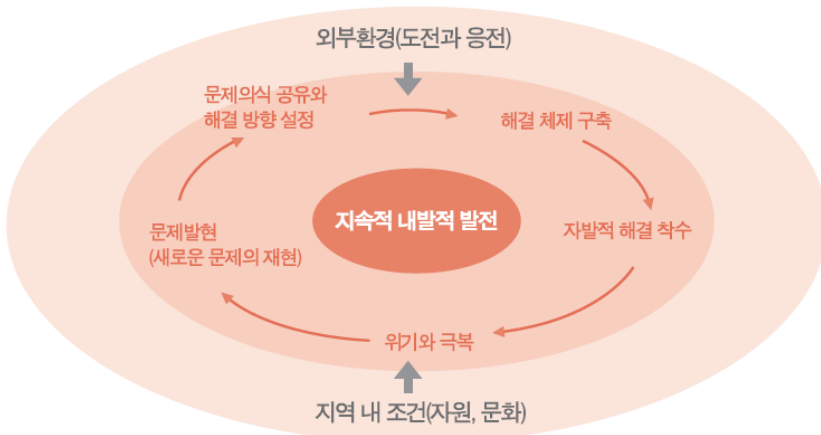
● 외래형 개발전략의 한계에 따른 『내발적 발전론』 도입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자산 활용과 내·외부와의 파트너십 구축

● 지역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발전 방안 모색

- ◆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개발** :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발 지원
- ◆ **지역 리더의 육성** : 주민들이 자발적인 사업추진주체가 되기 위한 지원
-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행정과 주민의 협의체 구성과 원활한 작동을 지원
- ◆ **계획 평가와 성과의 확산** :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과 주변으로 파급효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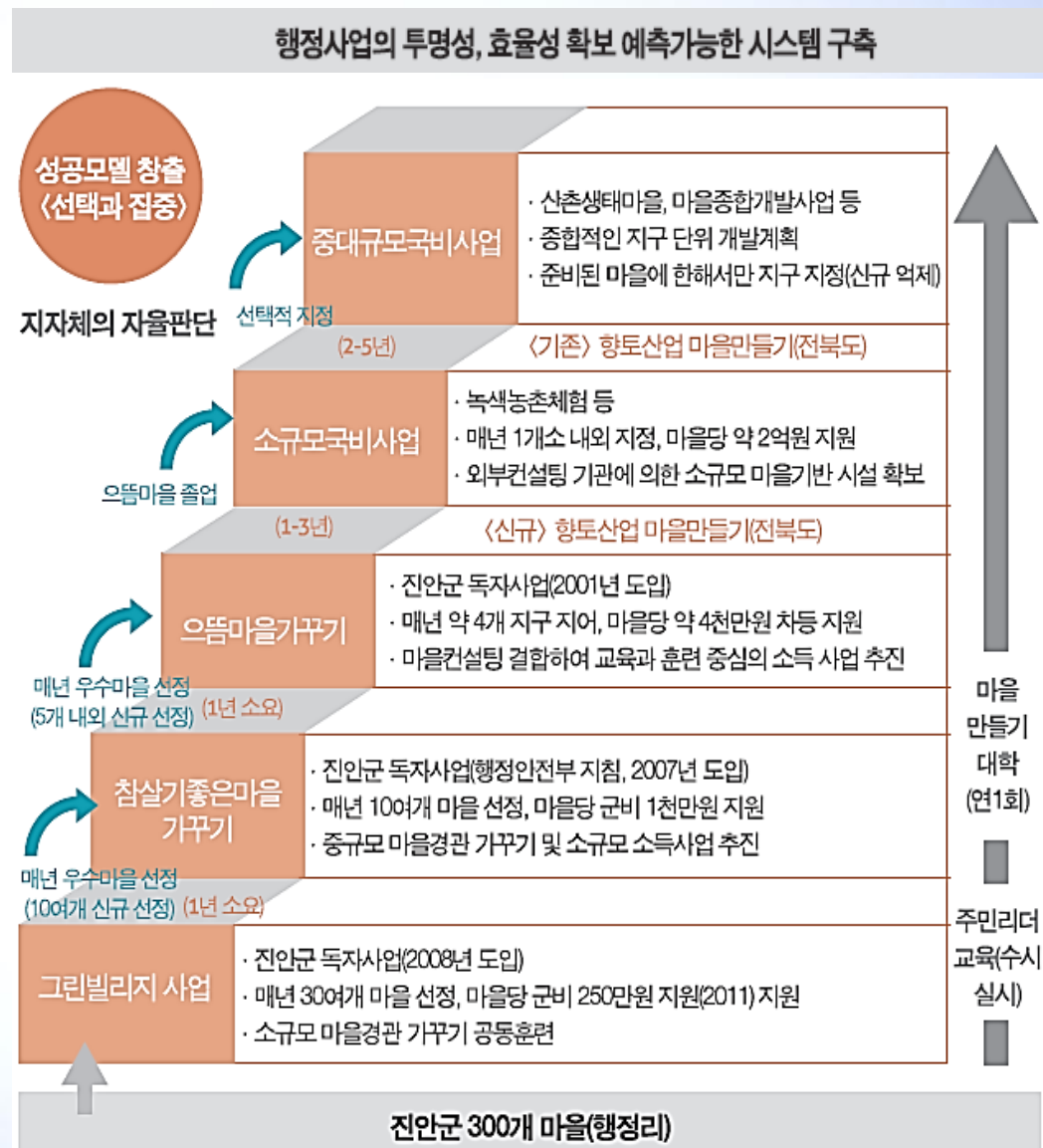
내발적 발전전략의 추진과정



실태평가와 추진사례

● 진안군 마을개발사업 “5단계 접근론”

-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각종 사업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진안군만의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개발사업 시스템
- 분산 추진되었던 마을 단위 사업의 단계화를 명시하고, 예산과 행정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 행정 내 결재시스템에 상호협조 혹은 정보공유를 이루어지게 하여, 행정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 진안군 마을만들기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운영 (2010년 5월~)



자료: 국토연구원. 2011. 마을만들기_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실태평가와 추진사례

● 시사점 :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만들기”

▶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정비

- 행정전담팀 신설과 관련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행정운영 도모
-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독자적인 행정사업 발굴과 적절한 외부 지원 활용
- 지역인재 양성, 지원그룹 조직,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의 우선 투입

▶ 지속가능한 지역운영 시스템 구축

- 지역에서 자력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자치조례 등) 마련
- 행정과 주민 사이를 이어주고, 부족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 기존 사업을 연계·통합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 도모



2. 국내 우수사례 : 전북 전주시

● 도심 쇠퇴와 지역경쟁력 저하

- ◆ 천년 고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과 문화의 도시, 전주
- ◆ 시가지 외곽개발에 의한 인구감소, 경제활동 저하, 기반시설 노후 등 구도심 쇠퇴

▶ 도심 활력증진과 도시 균형발전 모색

- ◆ 2000년 이후 특화거리 조성, 한옥마을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주천 정비 등 도심활성화 관련 사업의 추진
- ◆ 2003년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한옥보존조례' 제정을 통한 도심재생 기반구축

▶ 지역자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모색

- ◆ 2007년 '천년전주명품사업단'의 설립과 전주명품 '온' 브랜드 육성
- ◆ 2008년 "천년 전주 전통기술의 지적 자산을 통한 산업화 연구" 등 R&D사업을 통한 전통의 보존·계승·산업화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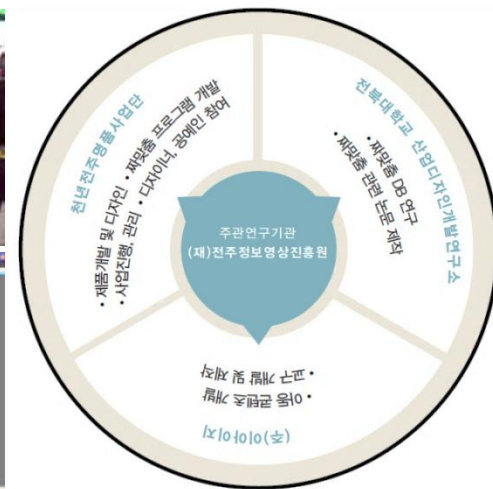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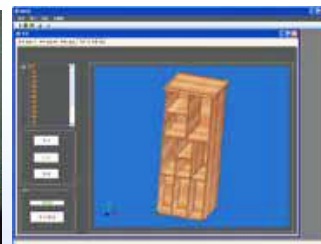
실태평가와 추진사례

● 지역 공예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 ◆ 전통 공예기술의 체계적 연구,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련 서적 발간
- ◆ 지역 공예인 네트워크 형성,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유도

- ◆ 지역 장인과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제작
- ◆ 동호회/전시회,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전통 공예문화의 확산 유도
- ◆ 전통짜맞춤기술, 대나무연마기술 등 전통기술의 연구와 산업화 유도
- ◆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전통문화 관련 시장개척



실태평가와 추진사례

● 민관 협력에 의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 2009년 전주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 정부시책과 연계한 4+1 도시재생 권역 중심 개발 유도
 - ▶ 남부도심 권역 : 전라감영·전주부성 복원, 풍남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아·태문화거리 조성 등
 - ▶ 팔달로 권역 : 노송천 복원·주변지역 간판정비, 팔달로 보행우선구역 사업, 공구거리 조성 등
 - ▶ 북부도심 권역 : 종합경기장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덕진공원 일대 문화관광벨트화 사업 등
 - ▶ 백제로 권역 : 건강·의료 밸리 조성 등
 - ▶ 산업단지 권역 : 노후산업단지 재생, 첨단상업(탄소) 밸리 조성 등

●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구축

- ◆ 사업 권역별 도시재생 TF팀 구성, 도시재생추진단 및 마을만들기 포럼 운영
- ◆ 2011년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의 도시재생 TB(테스트베드)사업 유치



실태평가와 추진사례

● 시사점 : “지역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자원 · 역사자원의 활용

- 문화인프라조성(H/W) 사업과 전통문화육성(S/W) 사업의 연계추진
- “전주한옥마을” : 국제슬로시티, 으뜸명소에 이어 행안부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2012)’ 선정으로 도시관광활성화 유도
-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전당, 한스타일 진흥원 등 유치·건립중
- 천년전주명품 ‘온’ 브랜드 개발 및 육성사업 추진
- 전통공예기술 관련 R&D연구, 인재양성, DB구축, 상품개발 관련 사업 추진



자료: 국토연구원. 2007.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중 “전통문화도시 조성방안”

실태평가와 추진사례

● 시사점 : “지역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활력 재창출 도모

- 전통문화도시 관련 사업과 병행한 쇠퇴 구도심의 재생 유도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TB사업” : 전주시 중앙동(약15ha)의 쇠퇴한 주거 및 상가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시재생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자력형 재생 유도
- 도시재생지원센터·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 설립, ‘천사마을사랑 축제’ 등 지역 축제 개최, 지역협력 기반구축(지역대학 산학협력단, 지자체, NGO/NPO 등) 등



자료: 정철모. 2012. 전주시 도시재생추진사례



IV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특화발전을 위한 기본원칙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
 - ◆ 외부(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개선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지역주체에 의한 자발적 발의
- 지자체가 가진 **잠재요소를 지역자산으로 적극 개발**하여 특화발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우선 활용
 - ◆ 해당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
 - ◆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자산을 발굴
 - ◆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 위치, 관리주체 등을 감안한 활용의 우선순위 차별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특화발전을 위한 기본원칙

지역자산의 유형별 분류 및 구성요소

구분		자산별 정의	대표적 구성요소
자연적 자산	장소적 자산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접근성	-시장·상권의 형성 정도 -도시로의 접근 용이성(도로·철도·공항 등)
	환경적 자산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쾌적성	-어메니티 자원의 보유 정도 -자연경관(강·산·바다·평야) -환경의 질적 수준(대기·수질·소음 등) -특이한 지형·지질·동식물·기후 등
구조적 자산	공간적 자산	지역의 공간구조적 특징	-건축물의 구성·배치·노후도 -고유하고 독특한 가로경관·풍경 등
	시설적 자산	지역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특성	-기반시설(건물·상하수도·도로·항만 등) -토지이용(주거·공업·상업 등) -용도별 지역·지구지정 여부 -주거여건 등
문화적 자산	역사적 자산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 보유 및 활용성	-문화재·문화시설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유물·유적·전설 등) -산업유산 등
	관광적 자산	지역 내 예술·관광자원 보유 및 활용성	-축제·이벤트, 예술작품, 위락 -관광명소, 관광시설, 관광지구 등
사회적 자산	인적 자산	지역 구성원의 사회활동 정도 및 잠재력	-커뮤니티 -인적 네트워크(규범·신뢰·참여·리더·리더십·협력) -구성원들의 행위·생활상 등
	이미지 자산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 정도	-지역 내 정체성(문화적 다양성·개방성) -지역의 상징성(매력성·브랜드·인지도·호감도·특산품·음식) 등
경제적 자산	기업체 자산	지역 내 기업활동의 기반 및 정도	-기업의 규모·경쟁력·일자리·기술개발·조직문화 -정부의 지원정도(인적·재정적·프로그램적) -기업의 지역내 융화정도 등
	노동력 자산	지역 구성원의 경제활동 정도 및 잠재력	-지역 내 노동력·노동시장·고용 프로그램 -개인·집단의 경험·지식·교육 정도 등

자료: 이왕건, 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프로세스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 특화발전에 기여할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목록화(inventory)** 하여 정보공유 및 활용
-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필요로 하는 지역주체들에게 제공할 경우 시행착오를 최소화

지역특화발전 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 지역위, 중앙정부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표성을 가진 전담조직(추진협의체)**을 설치, 운영
- 신뢰도와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지역자산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 노후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양질의 시설로 대체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환경개선사업은 지양**
- 부분정비, 이전적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을 설치하는 정비방식**

세분화, 공간적 집중화,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 경제재생 필요지역, 산업기능 도입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 문화·사회·복지·교통시설 확충지역 등으로 **특화발전지구**의 **성격을 세분화하고 공간적으로 집중**
- 기존산업 유지, 신규산업 유치,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포함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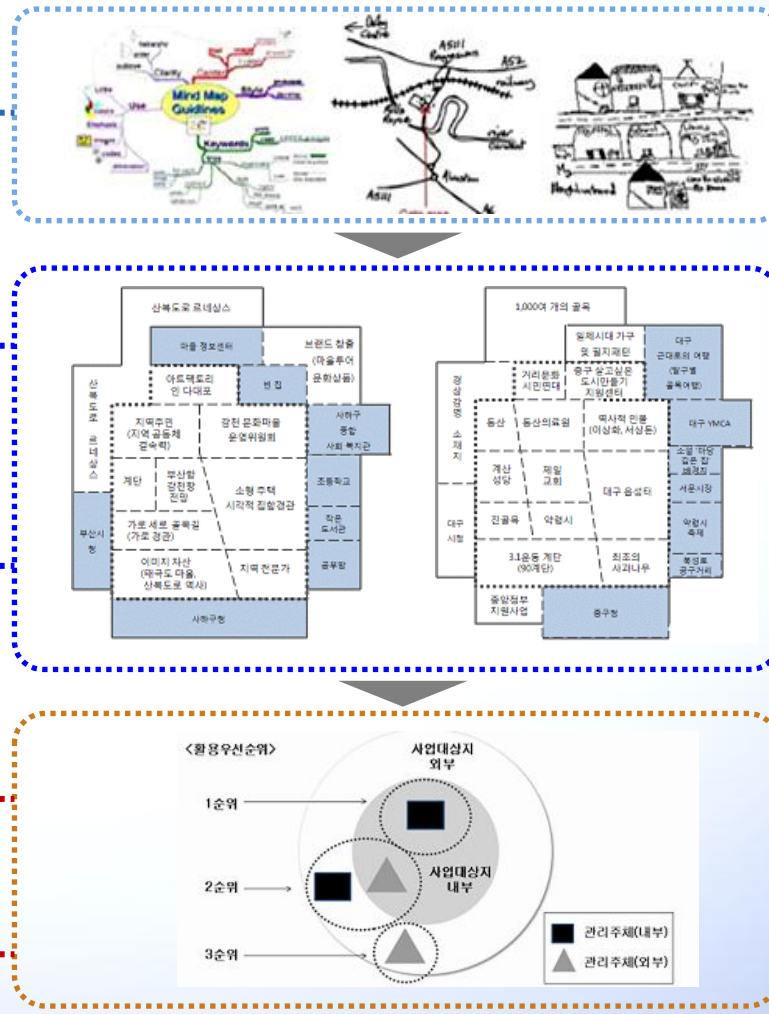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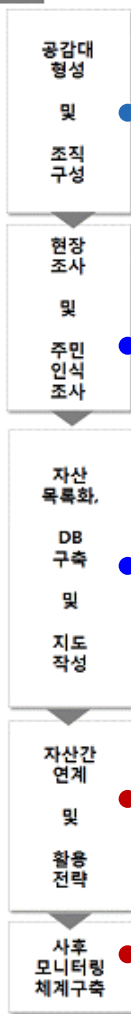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법정 계획과의 연계성, 지속성 강화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법정계획에 지역자산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거나 의무화함으로써 **법적 지위 확보**
- 소규모의 **점진적인 특화발전** 활동을 지원하고 확산을 유도하여 **지속성**을 확보

2. 특화발전 프로세스



감사합니다